

"Fill 청렴!, Feel 양심!, 必 청렴한 공단!"



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센터

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 목 2013년도 악취배출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 안내

1.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 공단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「악취배출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」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3. 이와 관련하여 기술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, 귀 단체에 소속된 사업장에서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제도를 홈페이지 게시, 이메일, 및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가. 지원기관 : 한국환경공단(악취기술지원팀)
- 나. 지원비용 : 무상지원(시설설치 및 금융지원 제외)
- 다. 지원대상 :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악취배출사업장
- 라. 지원내용 : 악취배출원인 조사, 악취측정분석, 저감방안 제시 및 사후관리 등
- 마. 신청방법 : 신청서 및 중소기업 자가진단 확인서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 신청

- 붙임 : 1. 악취기술지원 대상 및 절차 안내(신청서 포함) 1부.
2. 악취기술지원 안내 팸플릿 1부. 끝.



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센터장



한국석유화학 협회 등 21개 협회,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등 27개 협동조합 및 연합회 등

★대리 김수겸 팀장 전결 01/11 이철민

협조자

시행 악취기술지원팀-76 (2013.01.11.) 접수 ()

우 302-82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6 (둔산동 937) / http://www.keco.or.kr
전화 042)939-2431 /전송 042)939-2469 / 이메일 xman10521@keco.or.kr / 공개

악취기술지원 대상 및 절차 안내

신청서 작성

- 신청대상 : **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장, 지자체에서 요청한 사업장**
- 신청서류 :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(붙임1), 악취배출시설 공정도, 악취물질 처리계통도,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(붙임2, 중소기업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)
- ※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은 기술지원에 필요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



신청서 접수

- 접수기관 : **한국환경공단**
- 접수시기 : 연중
- 접수방법
 - 중소기업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: 우편 또는 팩스(042-939-2469)
 -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: 전자문서(공문)



기술지원 계획 확정

- 신청 사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지원 계획 확정
- 지원시기 및 인력, 준비사항,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포함
- ※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장, 악취저감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



기술지원 계획 통보

- 기술지원 개시 7일 전까지 기술지원 계획을 신청인에게 통보
- ※ 기 기술지원 사업장, 기술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, 특정 지역 및 업종의 신청 건수가 집중된 경우 등은 실시 계획을 보류할 수 있음



기술지원 실시

- 수행기관 : **한국환경공단**
- 사업장 현황조사, 악취배출원인 파악, 악취물질 측정, 저감방안 제시 등



기술지원 결과서 통보

- 기술지원 신청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, 개선 방안을 신청인에게 통보
- ※ 기술지원 보고서는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자료로 제공되며, 지자체에서 행정조치를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

※ 관련근거 :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(악취저감기술 지원의 대상 및 절차), 제9조(권한업무의 위임과 위탁),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(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)

[붙임 1]

악취방지법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서식] <신설 2012.10.18>

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신청인	사업장 명칭	대표자(성명)
	사업장 소재지	전화번호
	신청부서 및 담당자	담당자 E-mail
신청 내용	업 종	종업원 수
	주요 생산품	주요 생산 공정
	주요 악취배출공정	
	악취방지시설 종류	
	기술지원 희망일자	
	기술지원 요청사항 (악취관련 문제시설 요약 등 가능한 상세히 기술)	

「악취방지법」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기술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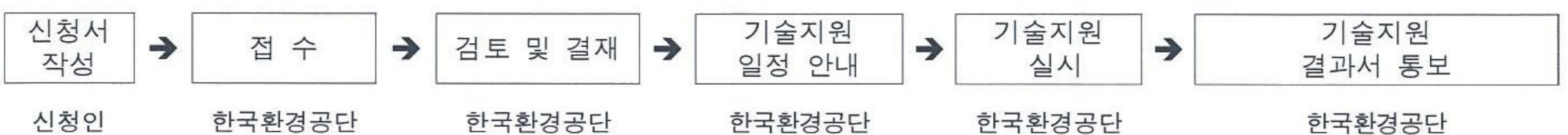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

첨부서류	1.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(工程圖) 2.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3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(영 제8조의2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< 작성요령 >

(뒤 쪽)

법인사업자로서 다른 법인과 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은 모든 란에 체크하고, 법인사업자로서 다른 법인과 출자관계가 없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①~④까지만 체크

- ① 주된 업종 : 해당 기업이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기재(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름)
- ② 업종별 규모기준 적합 여부 :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(매출액) 중 하나의 요건에 적합하면 “예”에 체크하고, 두 가지 요건에 모두 부적합하면 “아니요”에 체크. 이 때 상시 근로자 수, 자본금(매출액)은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상시 근로자 수, 자본금(매출액)을 적용

주된 업종(대분류 기준)	규 모
제조업	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
광업, 건설업, 운수업	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
출판·영상·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,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	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
농업·임업 및 어업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, 도매 및 소매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금융 및 보험업, 예술·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	상시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
하수처리·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, 교육 서비스업,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	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
부동산업 및 임대업	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

- ③ 상한기준 적합 여부 : 상한기준 모두에 적합 할 경우 “예”에 체크하고,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하면 “아니요”에 체크
- ④ 유예기간 적합 여부 : 업종별 규모기준에 “아니요”를 체크한 경우, 사유가 발생한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“예”에 체크하고, 3년을 경과한 경우 “아니요”에 체크. 업종별 규모기준에 “예”에 체크한 경우 “해당없음”에 체크
- ⑤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으면 “예”에 체크하고, 해당하면 “아니요”에 체크
- 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(외국법인 포함)이 지분의 30%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“예”에 체크하고, 해당하면 “아니요”에 체크
- ⑦ 관계기업과 합산하여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, 자본금, 매출액, 자산총액, 자기자본, 3년 평균 매출액 등이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에 적합하면 “예”에 체크하고,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하면 “아니요”에 체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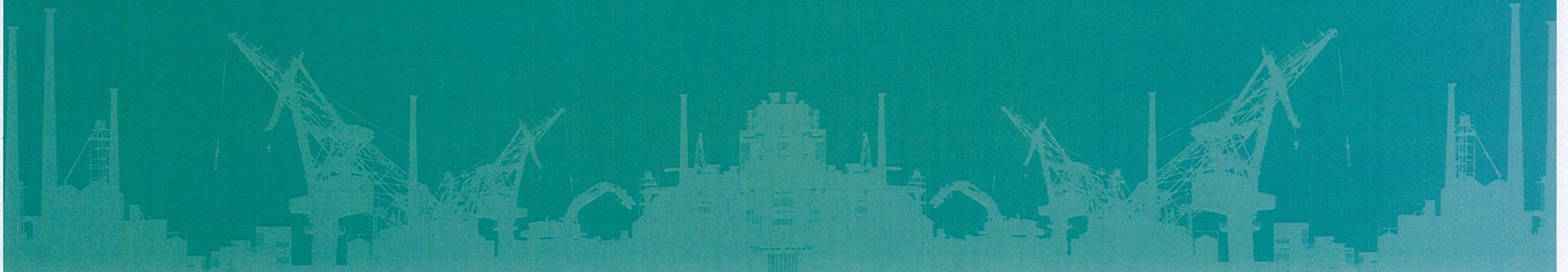
※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(<http://sminfo.smba.go.kr>)에 회원가입 후 해당기업의 관계기업 여부 등 중소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 기능을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<용어 설명>

- 상시 근로자 수 :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
- 자본금 :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산 금액
- 자기자본 :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
- 자산총액 :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총계
- 매출액 :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
- 3년 평균 매출액 : 지난 3개년간의 매출액을 합하여 3으로 나눈 금액

악취배출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

한국환경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.



악취기술지원은?

추진배경?

저농도에서 감지되는 악취의 감각공해적 특성

자체 해결능력이 없는 중·소규모 사업장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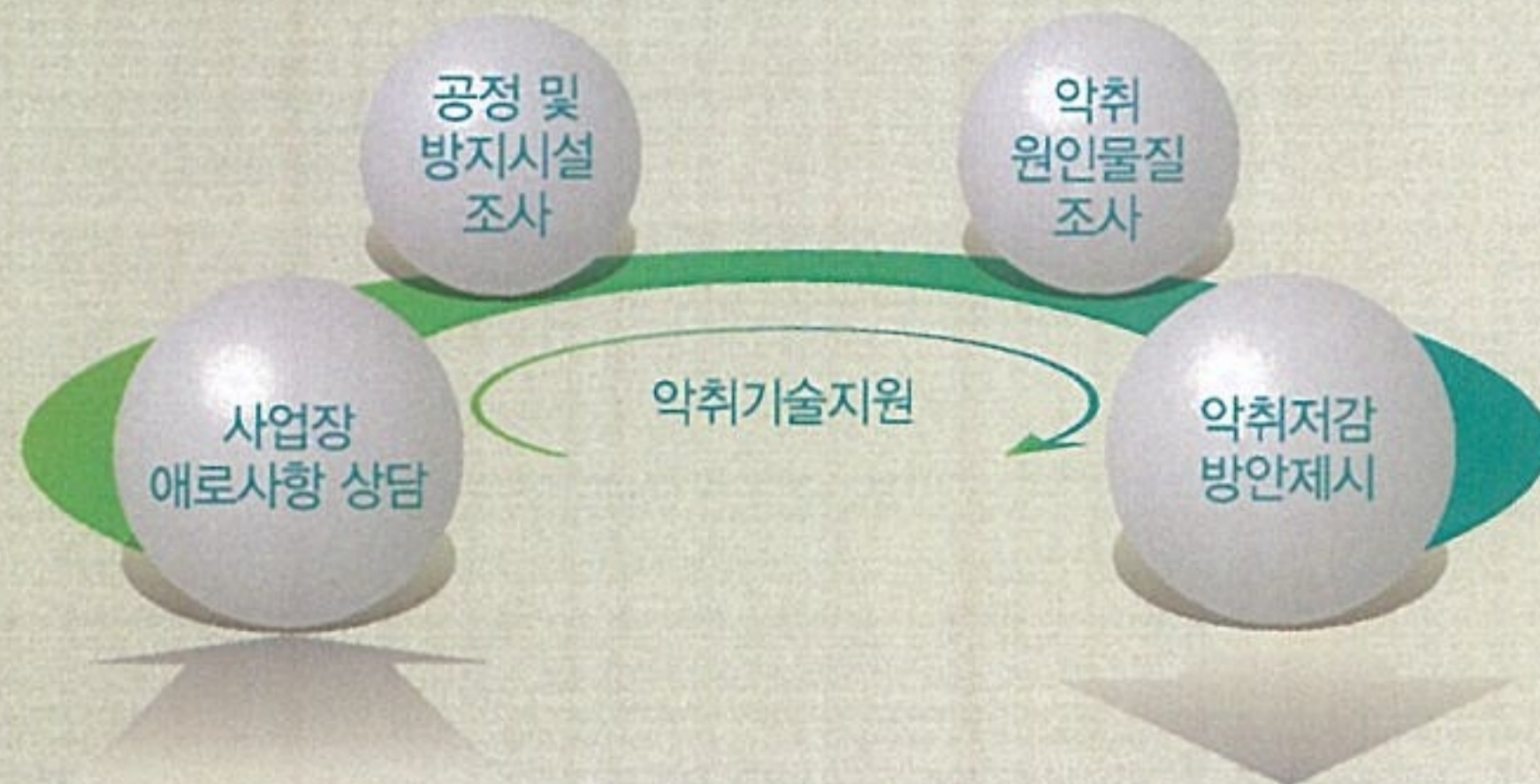
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악취에 대한 관심 증대

악취민원의 지속적인 증가



악취기술지원?

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·소규모 사업장 등의 악취관리능력 향상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

- 대상**
- 스스로 악취관리가 어려운 사업장
 -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
 - 악취 민원발생

- 기대 효과**
- 사업장 악취관리능력 향상
 - 사업장 주변 환경개선
 - 악취민원 발생 예방

악취기술지원 수행과정은?

담당자 상담

- 원료 및 공정 등 일반현황 파악
- 악취민원 발생 조사 및 사업장 애로사항 청취



악취배출공정 조사

- 악취배출공정 및 악취발생원인 파악



국소배기시설 점검

- 설계사양 및 운영현황 파악
- 적정 가동여부 점검 및 악취포집현황 조사



악취방지시설 점검

- 설계사양 및 운영현황 파악
- 적정 가동여부 점검 및 악취처리현황 조사



악취물질 측정

- 시료채취지점 선정 및 악취물질 측정 (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)



저감방안 제시

- 문제점 도출 및 악취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
- 악취기술지원 보고서 사업장 제공



악취기술지원 결과는?



악취기술지원 성과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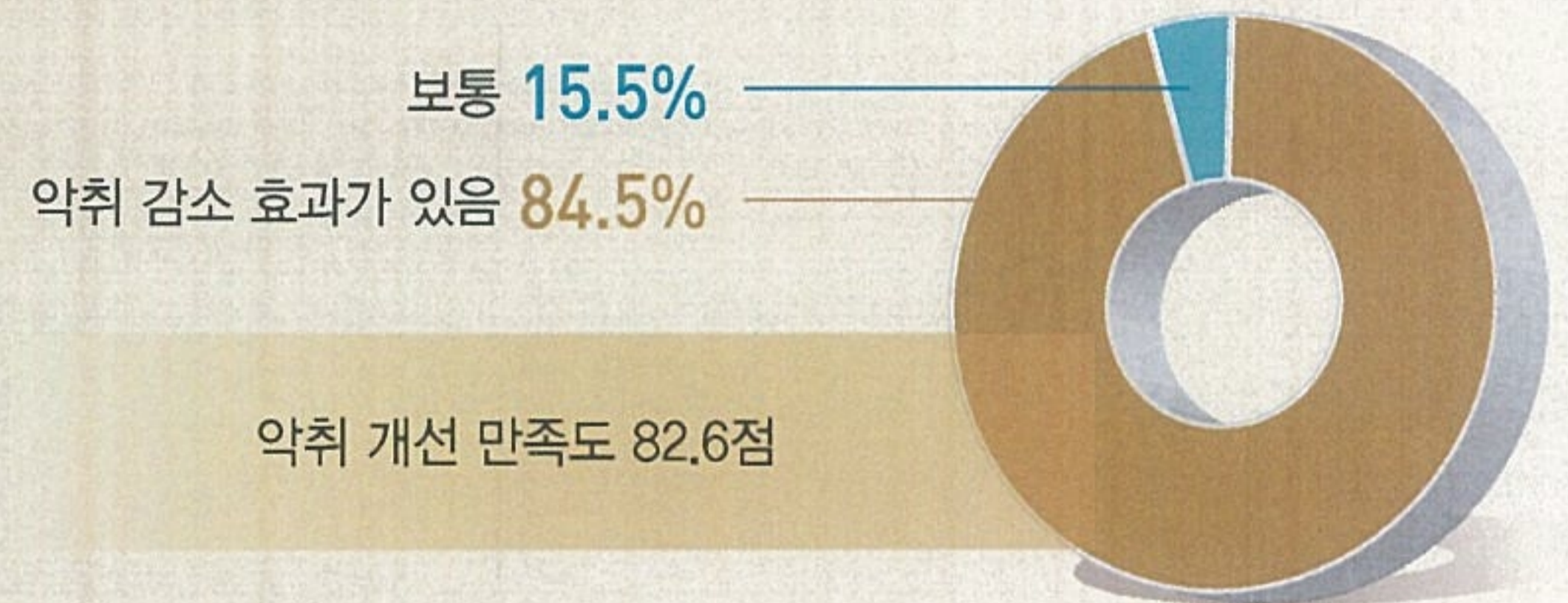
악취기술지원 비용절감효과

괄호 안의 사례 수는 각 부문별 비용절감 효과 금액을 응답한 사업장 수임 (n : 41개소 / 단위 : 만원)

공정부문	시설관리	시설선택	시설설치
141,500 (n=38)	69,200 (n=39)	40,000 (n=23)	34,800 (n=12)
총 비용 절감 285,500만원			
사업장당 평균 6,900만원			

※ 악취기술지원을 받은 사업장 중 2011년 하반기 이후 사후관리를 실시한 4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(2012년 11월, (주)포커스컴퍼니)

악취기술지원 사업장 주변지역 주민만족도



※ 악취기술지원을 받은 사업장 주변 6개 지역의 주민 168명을 대상으로 조사 (2012년 11월, (주)포커스컴퍼니)

자주 묻는 질문

Q 악취기술지원의 무상지원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?

A 무상지원 범위는 기술컨설팅 및 측정·분석(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) 비용 등이 해당되고, 시설 설치와 관련한 금융 지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.

Q 악취기술지원 대상시설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

A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악취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악취민원 다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면 기술지원이 가능합니다. 또한 지자체에서 악취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도 해당됩니다. 단 공공 환경시설은 악취기술진단 대상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.

Q 악취기술지원 후 보고서를 받았습니. 현재 사업장 여건상 시설 설치가 어려운 상태인데 꼭 보고서 내용대로 변경해야 하나요?

A 보고서에 제시된 측정결과 및 개선방안은 단순 참고자료이며, 사업장에는 어떠한 의무사항도 없습니다. 향후에 공정 및 시설을 개선할 경우 보고서를 참조하여 악취를 저감하는데 활용하시면 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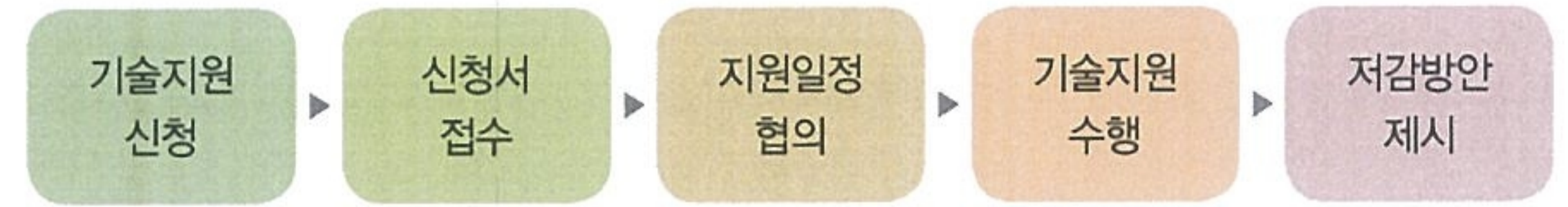
Q 악취기술지원을 받고 공정과 시설을 일부 개선하였는데 악취가 얼마나 저감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.

A 악취기술지원을 수행한 사업장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공정변경, 설비변경,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악취 저감과 관련하여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한번 방문 후 개선효과를 평가해 드리고 있습니다.

Q 악취기술지원 결과 때문에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?

A 악취기술지원 보고서는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자료로 제공되며, 지자체에서 행정조치를 위한 자료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.

악취기술지원 절차



악취기술지원 신청방법

- 개별사업장 : 신청서 및 중소기업 자가진단 확인서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
- 지자체 : 개별사업장 신청서 취합 후 전자문서(공문)로 신청
- 신청서 등 서식 다운로드 :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(www.keco.or.kr)
- 문의사항 연락처 :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센터 악취기술지원팀
 - 전화 : 042-939-2432, 팩스 : 042-939-2469
 - 주소 :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6 (둔산동 937)

악취기술지원 관련 정보 안내

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(www.keco.or.kr)의 악취기술지원 안내 페이지에서 악취기술지원 업무와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. 아래의 순서로 접속하시거나 주소창에 <http://keco.or.kr/01kr/business/climate/02/04/index02.jsp> 을 입력하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.



①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주요사업-기후대기 클릭



② 기후대기 페이지에서 악취관리-악취기술지원 클릭



③ 악취기술지원 신청서 다운 및 자료실 이용 가능